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9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앤도버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「지배구조법」에서 정한 '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', '임원 선임·해임에 대한 공시·보고의무 위반'에 대하여 과태료 58.8백만원 부과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

□ 「지배구조법」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(업무집행책임자 포함)이 될 수 없고,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

○ 앤도버자산운용㈜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사로부터 업무상 배임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인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직에 준하는 조치(20xx.xx.xx.)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,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20xx.xx.xx. 형식적으로 □본부 부장(직원)으로 채용하고 '이사'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(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)하게 하면서,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2. 임원 선임·해임에 대한 공시·보고의무 위반

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·해임(사임 포함)할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,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○ 앤도버자산운용㈜는 20xx.xx.xx.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에 준하는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,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고 20xx.xx.xx. 해임(사임 포함)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○ 「지배구조법」 제5조 제1항, 제7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3조 제2항 제1호·제1의2호· 제1의3호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항, 제34조, [별표2], 「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「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」 제2조, [별지1]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, [별표 3]